제4회 대회 서면심사 방법 및 주요 예시 논점

심사 방법

1. 심사 서면

▣ 민사 분야

- 총 86개팀 서면 제출
- 총 20쪽 분량 : 소장(20장 이내)

▣ 형사 분야

- 총 98개팀 서면 제출
- 총 25쪽 분량 : 변론요지서(15장 이내), 의견서(10장 이내)

2. 심사 절차

▣ 심사 기준 획정

▣ 평가단의 평가(1개 답안을 2명의 평가위원이 평가) 후 검증단의 검증을 추가로 실시

3. 심사 기준

▣ 참가팀에 대한 절대평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연분야별 본선 진출 상위 36개팀의 선정을 위한 상대평가에 적합한 기준 설정

▣ 평가단의 평가방법

- 경연분야별 주요 예시 논점 : 별지 '주요 예시 논점' 참조
- 전체적으로는 제시한 논거의 설득력 여하 및 작성한 서면의 작성 목적

충실도 여하에 따라 우열 결정

- 주요 예시 논점에 대한 언급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될 경우 가점 부여
- 논리 구성에 있어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법리를 전개하는 경우, 전체적인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경우 등의 논리 전개는 감점 처리
-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4단계(A, B, C, D) 상대평가 방식 채택
  - 각 경연분야별 B 이상 36개팀이 본선 진출
  - 비율표(예시)

민사			형사			표기점수
등급	비율	팀수	등급	비율	팀수	
A	13.9%	12	A	12.2%	12	90점
B	27.9%	24	B	24.5%	24	80점
C	29.1%	25	C	35.7%	35	70점
D	29.1%	25	D	27.6%	27	60점
합계	100%	86	합계	100%	98	

  - 서면 지연 제출, 분량 초과, 서면양식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대회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감점 처리

▣ 검증단의 검증방법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과 협의하여 재평가
  - 평가위원 간 평가점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합격선 주변(B와 C)의 서면

● 재평가시 기준

- 평가단의 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평가기준 재확인
- 합격선 주변의 서면에 대하여는 주요 예시 논점 누락 여부, 논거의 충실도, 대법원 판례의 인용 적부 및 이해도, 논리적 흐름, 용어 사용의 정확성 여부 및 명백한 오류 유무, 서면 구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의 우열 재확인

▣ 순위 결정

● 최종점수 순 **[끝]**

[별지]

주요 예시 논점

[민사 문제]

1. 금전지급청구 부분

가. 민국은행에 대한 전부금 청구

-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여부,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과 권리남용금지와의 관계
- 전부명령과 변제의 효력(연대보증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미치는 효력)

나. 오석건설에 대한 자재대금 청구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민법상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보조적 상행위와 상행위 대리행위 방식(비현명주의)
- 상행위와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다. 양건필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

라. 김현수에 대한 보상금 청구

-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도한 건축자재의 신축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 보상청구권의 상대방 :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건축허가명의와의 관계 등)
- 자재대금지급의무와 보상금지급의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 등)

2. 책임재산 관련 부분

가. 오석건설 책임재산 관련 부분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담보권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 양건필 책임재산 관련 부분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전세권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 임차권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다. 김현수 책임재산 관련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이 사건 학익동 토지 및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의 유형과 소유권의 귀속관계
-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
-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위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어 말소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기명의 회복 방법(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형사 문제]

1. 국외이송약취교사, 피약취자국외이송교사의 점

카카오톡, 사진보관함에 저장된 대화내용, 사진의 증거능력(임의동행/긴급체포의 위법성, 사후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동의서 작성으로 인한 하자 치유 여부), 검사 작성 란아잉의 피의자신문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대한 인과관계 단절 내지 희석,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특신상황 해당성 검토), 친권자인 모(母)의 주체성을 비롯한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피고인의 교사행위 해당성 및 인과관계, 국외이송약취 교사, 피약취자국외이송교사의 관계, 정상관계 등

2. 횡령의 점

김민수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의 성격, 김민수의 증여·사망으로 인한 신탁자 지위 이전 여부, 피해자의 특정, 1차 근저당권 설정·대출금의 개인적 소비·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각 법적 평가, 2011. 10.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이 사건 임야의 처분행위의 횡령죄 성립여부, 정상관계 등

3. 배임증재의 점

사법경찰리 작성의 문효식, 박일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임의동행의 적법 여부와 박일무와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증거능력, 타인의 사무처리자 해당 여부, 부정한 청탁에 관한 재물공여인지 여부, 사후 금원 지급에 의한 배임증재 성립여부, 정상관계 등

4. 뇌물공여의 점

100만 원권 수표 2장의 증거능력, 검사 작성 유희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유희원의 법정진술의 각 증거능력, 정상관계 등

5. 기타

란아잉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피고인 또는 란아잉의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현재 판례의 태도에 따를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의견 등 **[끝]**